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제2023 - 08 - 014호

안 건 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피 심 인 (법인등록번호 :)

대표자

의 결 일 2023. 3. 21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기초 사실

1. 피심인의 일반현황

피심인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위치정보법'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허가 번호	사업자	대표자	사업 내용

II. 실태점검 결과

1. 점검 배경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('21.9월 ~ '22.7월)을 진행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피심인의 행위사실

피심인은 이용자 연령 및 개인정보책임자 등 이용약관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공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현장점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및 검사를 거부·기피한 사실이 있다.

< 현장점검 협조 요청 및 회신 내역 >

일시	내용
'22.5.26	에게 위치정보법 관련 현장점검 실시 통보 공문 및 이메일 발송
'22.6.2	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현장점검 협조를 요구하였지만 는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지 않아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답함
'22.7.7	에게 위치정보법 관련 현장점검 협조 2차 공문 및 이메일 발송
'22.7.12	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지 않아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

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방송통신위원회는 '22년 12월 15일에 '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3년 1월 2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III. 위법성 판단

1. 관련 법 규정
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이 이용자가 이용약관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현장점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,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및 검사를 거부·기피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IV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, 제43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1. 기준 금액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.

<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 과태료 부과 기준 >

위 반 조 항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 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	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3호	300	600	1,000
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(법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	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14호	300	600	1,000

2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소상공인으로서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경한다.

3. 최종 부과금액

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3,0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V. 결론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3월 21일

위원장 한 상 혁



부위원장 안 형 환



위원 김 현



위원 김 효 재



위원 김 창 룡

